

마포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4. 2. 2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2.26. 이 필 레 의원 외 17명
- 나. 회부일자 : 2014.2.27.
- 다. 상정일자 :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4.2.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 필 레 의원

가. 제안이유

- 1) 최근 흡연에 따른 진료비가 급증하고, 생명까지 잃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2)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 3)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

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함.

나. 주요내용

- 1)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2) 마포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 구역 지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지난 해 8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음)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모집단으로,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후 분석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로 조사 되었음.

흡연으로 인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35개 질환에서 연간 약 1조7천억원으로 분석되었음.

이 지출 비용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고,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으며, 상급 병실료 또는 선택진료비를 해소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가진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까지 밝혀낸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늘어날 것임.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위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0 「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재정절감을 위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등에 따라 마포구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와 간접흡연폐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마포구 각 연령대별 흡연인구 비율은 22.1%로 연령대별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40-49세 인구의 흡연율은 28.2%로 평균 흡연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40대 인구의 금연을 위한 구체적 사업 시행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2009년 49.7%→2012년 40.7%)하고 있고, 여성 흡연율은 약간의 감소추세(2009년 5.4%→2012년 4.9%)를 보이고 있으나 마포구 남성 흡연율은 선진국 남성 흡연율인 35%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인바, 집행부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